

공 고

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17-1201호

1. 우리 구 등촌동 656-35 외6필지 일대 세립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세립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. 세립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세립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2017년 9월 6일
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

< 세립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>

가. 공람기간 : 2017. 9. 6. ~ 2017. 9. 20.(15일간)

나. 공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: 강서구청 주택과(☎ 2600-6825),
세립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

다. 인가신청 요지

- 1) 정비사업의 명칭 : 세립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
- 2) 시행구역 및 면적
 - 시행구역 : 서울 강서구 등촌동 656-35 외6필지
 - 면 적 : 5,032.3㎡
- 3)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
- 4)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성 명 : 세립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 장경필
 - 주 소 : 서울 강서구 화곡로64길 24, 비동 206호

5) 건축계획에 관한사항

- 건폐율 : 42.1438%, 용적률 : 277.1232%, 연면적 : 19,687.46㎡
- 아파트 5개동(지하3층/지상18층) 204세대 및 근린생활시설

라. 공람내용 : 사업시행인가 신청도서

※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서구청 도시관리국 주택과(본관 5층) 및 세립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며, 본 공람·공고 내용은 관계부서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